제 899 호
1982. 3. 26

[redacted]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612 호 :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 ····· 3

제 1613 호 : 서울특별시이륜소형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 7

제 1614 호 :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 ····· 9

◎ 규 칙

제 1966 호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 9

제 1967 호 :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 13

◎ 고 시

제 123 호 :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및건축계획승인 ····· 13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4 호 : 공평구역재 3 지구:개개발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 14
제 125 호 : 도시계획사업 (공용의청사) 시행허가변경 …… 15
제 125-1 호 :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지정 …… 18
제 126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지적승인 …… 18
제 127 호 : 돼지고기연동가격고시 …… 19

◎ 공 고
제 144 호 :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지정에따른
공람공고 …… 19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 3.26.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

◎서울특별시조례제 1612 호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중 "하천법 제 33 조제 1 항"을 "하천법 제 33 조 제 1 항 및 제 3 항"으로 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요금의 감면) ①시장은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등"이라 한다)이 공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와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지방세법 제 206 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점용료감면사유중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금을 면제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점용등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하천관리를 위한 점용등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점용등
4.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제 6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 조의 2 (요금의 최저한도) 1 건의 요금이 100 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별지 "요금산정기준"을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제 2 호의 을류 농지세 해당농업을 위한 점용료는 1981 년도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별표) 요 금 산 정 기 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로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年)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6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가. 갑류농지세 해당농업의 경우 연(年)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의 갑류 농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나. 을류 농지세해당농업의 경우 연(年)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유사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 또는 을류농지세과세표준소득금액의 100분의 15중 저렴한 금액 다. 미식부지 및 기타농작물경작의 경우 연(年) 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2.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年) 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다만, 76.8.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명기까지 조림수익분배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3.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年) 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구　　분	산　정　기　준
	100분의 5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4. 야적장등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年)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3. 하천부속물의 점용	구분란 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	1. 전기사업 연액 ㎥/sec당 100,000원 또는 이를 마력당 200원까지의 율로서 계산한 금액 2.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조합) 관경 25㎜이하 월액 5,000원 〃 50〃까지 〃 20,000〃 〃 75〃 〃 〃 30,000〃 〃 100〃 〃 〃 50,000〃 〃 200〃 〃 〃 60,000〃 〃 300〃 〃 〃 80,000〃 〃 400〃 〃 〃 110,000〃 〃 500〃 〃 〃 140,000〃 〃 600〃 〃 〃 190,000〃 〃 700〃 〃 〃 250,000〃 〃 800〃 〃 〃 300,000〃 자연취수 및 801㎜ 이상은 월최대취수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당 100원씩 적용. 다만,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할 경우 요금은 관별최대취수가능량을 산정

구 분	산 정 기 준
	합산하여 전기기준요금 적용 3. 농업용수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가산 4. 선박의 운항 가. 1톤이하 유선 월액 50,000원 1톤이상 유선은 1톤증가시마다 1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나. 부선(유선장을 제외한다) 50톤미만 월액 20,000원 51〃-100톤 〃 25,000〃 101〃-200〃 〃 35,000〃 201〃-300〃 〃 45,000〃 301〃-400〃 〃 55,000〃 400톤 이상은 100톤 증가시마다 8,000원씩 가산 5.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기준에 의거 산정
5. 지하의 유수채취	구분란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1.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월 200,000㎥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증가시마다 50원가산 2. 기타용수의 배수 월 10,000㎥-월 200,000㎥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증가시마다 50원가산
7. 토석, 사력의 채취	1. 서울특별시의 전년도 10월중 2회조사한 토사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구 분	산 정 기 준
	2. 제 1 호의 조사는 공신력있는 2개이상의 조사기관에 의하여 2개지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산정기준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9. 죽목, 잔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하지 않는 것은 구분란 제 7 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구분란 제 2 호에 준하여 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매점 포함)	인근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다만, 제외지등 인근토지등급 적용이 곤란한 경우 45등급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10. 전주	구분란 제 1 호에 준한다.
11. 기타의 점용 또는 사용	구분란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이륜소형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3.27.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

◎서울특별시조례제 1613호

서울특별시이륜소형자동차에 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이륜 소형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 세상인 및 농촌지역내에서 교통, 운반수단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륜소형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과세면제) 도로운송차량법 제 61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이륜 소형자동차중 그 총 배기량 85 cc 미만인것에 대하여 면허세 및 사독차세를 면제한다.

제 3 조 (불균일과세) 도로운송차량법 제 61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이륜

소형자동차중 그 총배기량이 85 씨씨 이상 90씨씨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제5종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면제신청등) ①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자동차관리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할 수 있다.

제5조(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 객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 소형자동차에 대하여는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 3.27.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

◎서울특별시조례제 1614호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7 조의 2 제 3 항중 "총무국장"을 "재무국장"으로 한다.

제 17 조의 2 제 4 항 제 1 호의 "3급 을류"를 "5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시행 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 . .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영 수 (印)

◎서울특별시규칙제 1966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가산금 부과) ①조례 제 2 조 제 2 항 3 항 및 4 항에 의한 가산금을 별지 4-1 호의 서식에 의거 부과하고 노외주차장등 주 [illegible] 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경우 요금미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4-2 [illegible] 의 서식에 의거 부과하여 이용자가 은행에 직접 납부토록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 주 [illegible] 및 가산금을 은행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위반 주차료금 및 가산금을 납부토록 독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4-2호서식

납 입 서

제 호	19 년도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갑) 유료주차장 (을) 주차장수입

(병) 노상주차장수입

一金 :

₩

노상주차요금및가산금

노 외 주 차 요 금

상기금액을 납입함

19 년 월 일

구주차장시설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인)

영수필통지서 (구청용)

제 호	19 년도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갑) 유료주차장 (을) 주차장수입

(병) 노상주차장수입

一金 :

₩

노상주차요금및가산금

노 외 주 차 요 금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19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영 수 증 (납부자용)

제 호	19 년도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갑) 유료주차장 (을) 주차장수입

(병) 노상주차장수입

一金 :

₩

노상주차요금및가산금

노 외 주 차 요 금

상기금액을 영수함

19 년 월 일

금고 (인)

귀하

주차요금및가산금통지서

제 호

주 소

성 명

차량번호

귀하는 소정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바 있어 (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토록 고지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납부토록 통지하니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소	
주차일시	
납부금액	
납부기한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 ○ 구 청 장

21-10 보 899 호 시 보 1982.3.26

납부고지서 (은행용)

번 호	위반주차 요금및가산금 납부고지서	서울특별시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주차장소		
차량번호		
적발일자		
적발시간	오전 오후 시 분	

귀하의 위반사항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아래 표시와 같읍니다.

1. 주차카드미부착 – □ 800원
2. 파킹메타미사용 – □ 800원
3. 초 과 주 차 시 – □ 400원
4. 무단주차점용료 – □ 800원

납부기한	198 년 월 일
납부장소	한국상업은행 및 서울시 공금수납대리점

확 인 자

주차감시원 ㊞

주차감시원 ㊞

198 년 월 일

구 청 장

(구청용)

번 호	영수필통지서 198 년	서울특별시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차량번호		

㈜주차장수입 ㈜주차장수입

㈜노상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일 금

₩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198 년 월 일

구청장 귀하

은행 접인

○ 귀하께서는 주차장법규를 위반하여 주차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과 무단주차 도로점용시는 적발시 1시간주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초과주차는 30분단위의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읍니다.

○ 이 납부고지서가 발급된시간(적발시간후30분이내에 주차카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주차장을 떠나지 않을 경우 제2차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도 초과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시고 가까운 은행에 3일이내에 납부하여 주십시요.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 구획선 밖에서 주차할 경우는 무단도로점용료를 받읍니다.

○ 장기주차하실분은 정기권을 구입 사용하십시요.

○ 이 주차요금은 시민여러분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시설과 노외주차장 확보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서식 제899호

1982.3.26 21-1

21-12 제899호 시 보 1982.3.26

(납부자용)

번 호	영 수 증 198 년	서울특별시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차량번호		

(甲) 주차장수입 (乙) 주차장수입
(丙) 노상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금 액
₩

상기 금액을 영수함.

198 년 월 일

은행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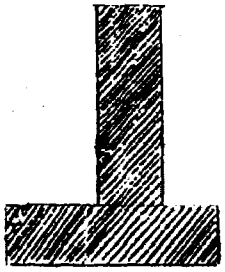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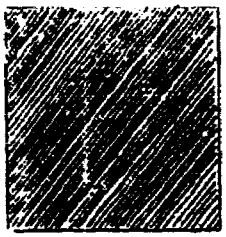

번 호	주차위반 주 차 표	담당	계장	과장

주차장소	
차량번호	
적발일자	
적발시간	오전 오후 시 분

귀하의 위반사항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아래 표시와 같읍니다.

1. 주차카드미부착 - 口 600 원
2. 파킹메타미사용 - 口 800 원
3. 초과주차시 - 口 400 원
4. 무단주차점용료 - 口 800 원

납부기한	198 년 월 일
납부장소	한국상업은행 및 서울시 공급수납대리점

확인자

주차감시원 ㊞

주차감시원 ㊞

198 년 월 일

구 청 장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

◎서울특별시규칙제 1967 호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 제 3 호중 "방호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23 호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및건축계획승인

1.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공고 제 12 호(80.1.16)로 공람한바 있는 용암2지구 일부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및 동법시행령 7 조와 건축법 제 33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5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구역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건축계획을 승인한다.

가. 관리처분 계획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관계도서는 서울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주택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나. 건축계획

1) 건축물의 높이

건축법 제 41 조, 41 조의 2 및 동시행령제 161 조 - 168 조등의 규정에 따른다.

2) 건축물의 규모

건축법제 39 조, 제 40 조 및 동시행령제 158 조, 158 조의 2, 제 160 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에 명시된 규모 이하로 한다.

구　분	층수	세대당전용면적	건폐율	용적율	비　고
단독주택	2	40 이상	50 %	250 %	

구 분	층수	세대당건용면적	건폐율	용적율	비 고
협동주택	2	40 이상	50 %	250 %	
연립 〃	3	〃	35 %	150 %	

단, 협동주택은 2 - 6가구의 입체화된 연립주택으로서 서울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2항에 의거 단독주택에 준하여 처리한다.

3) 건축물의 모양

가) 건물모양은 대지여건과 도시미관 및 구역전체의 경관조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

나) 건물지붕은 되도록 이면 대칭의 박공지붕 및 모임지붕으로 한다.

4) 벽면의 위치

건축법 제41조의2 및 동시행령 168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5) 대지내 조경

건축법 제9조의2, 제2항 및 동시행령 168조의3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39조, 40조, 41조 규정에 따른다.

6) 건축방법 : 주민자력.

7) 건축협의기간 및 건축기간

가. 협의기간 : 건축계획승인일로부터 4개월

나. 건축기간 : 건축계획승인일로부터 1년

1982.3.24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고시제 124호

공평구역제3지구재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서울시고시 제212호(80.6.12)에 의거 시행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공평구역제3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82.3.24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변경인가내용

구 분	기사업시행인가	금 회 변 경	비 고
시 행 면 적	5,382.2 ㎡	변경없음	
대 지 면 적	4,225 ㎡	〃	
건 축 면 적	1,440 ㎡	〃	
연 면 적	28,240 ㎡	〃	
건 폐 율	35 %	〃	
용 적 율	475 %	〃	
층 수	지상12층, 지하4층	〃	
주 용 도	업 무	업무및판매	지하1층판매
시 행 기 간	1980.6.12 ~ 1982.9.30	1980. 6. 12 - 1983. 9.30	

◎서울특별시고시제 125 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 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관내 강남구 서초동산 185 일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 시행허가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제24조와 건설부 고시제521호(81.12.31)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3. 26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 : 강남구 서초동산 185 일대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공용의 청사)
3) 사업시행면적
당초 : 54,877 ㎡
변경 : 61,489 ㎡ (증 6.612 ㎡)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법무부장관
5) 사업시행기간 : 79.8.6-84.12.31
6) 위치도및계획평면도 : 별첨 (별첨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0.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또는 건물의조서. 지번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환지예정지내)

구 지 번				환지예정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위 치	지 번	지목	면 적 (평)	지번및부호	면적 (평)	
강남구서초동	948	전	264	443	168.7	
〃	949	〃	308	〃	189.7	
〃	950	〃	203	〃	99.2	
〃	950-1	〃	80	〃	37.4	
〃	957-1	답	738	442	387.2	
〃	957-2	〃	219	443	114.6	
〃	957-3	〃	401	〃	210.1	
〃	957-4	〃	82	442	42.9	
〃	957-5	〃	48	443	25.4	
〃	957-6	〃	83	〃	40.4	
〃	958-2	〃	199	〃	104.3	
〃	958-6	〃	199	〃	104.3	
〃	958-7	〃	201	〃	105	
〃	958-10	〃	43	〃	22.7	
〃	958-11	〃	43	〃	22.7	
〃	958-12	〃	44	〃	23	
〃	959-1	〃	198	442	106.7	
〃	959-2	〃	316	〃	97.9	
〃	959-3	〃	198	〃	106.7	
〃	959-4	〃	198	〃	106.7	
〃	959-5	〃	347	〃	186.2	
〃	959-6	〃	454	〃	357.7	
〃	959-7	〃	44	〃	23.5	
〃	959-8	〃	70	〃	21.6	
〃	959-9	〃	44	〃	23.5	
〃	959-10	〃	44	〃	23.5	
〃	971-1	〃	443	〃	234.4	
〃	971-16	〃	199	〃	132.6	
〃	972-1	〃	54			

구지번				환지예정지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위치	지번	지목	면적(평)	지번및부호	면적(평)	
강남구서초동	971-22	답	92	442	48.6	
〃	산 183-2	임	1,714	443 나 436 가	151.1 818	
강남구반포동	296	답	172	435 나	874.1	
〃	297	전	332		[illegible]	
〃	301-1	잡	160			
〃	302-1	〃	59			
〃	302-3	〃	642			
〃	303	전	219			
〃	304-1	〃	235			
〃	301-3	잡	290	437 나	816.7	
〃	301-4	〃	298			
〃	306-3	〃	28			
〃	298	〃	576			
〃	299-4	〃	211	437	132.3	
〃	299-5	〃	216	〃	135	
〃	299-6	〃	208	〃	130	
〃	299-2	〃	208	〃	〃	
〃	306-3	〃	300	437 나	130.5	
〃	305-5	〃	254	437	142.9	
〃	305-19	〃	244	〃	138.8	
〃	306-3	〃	123	435	73.6	
〃	306-4	〃	1,234	〃	757.6	
〃	306-5	〃	384	〃	236.1	
〃	산 33-2	임	5,877	429 나	599	
2차2공구(체비지)	443-1			443	46	
〃 〃	443-2			〃	30.9	
〃 〃	437-1			437	35	
〃 〃	429-2			429	440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일반지구)

위 치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강남구서초동	산 185-11	임	44.130	29.753	해주정씨종친회	

◎서울특별시고시제 125-1호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지정

1. 당시 도시계획 재개발사업 구역 중 사업계획결정된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을

가. 구역별인가신청기간 지정 내역

도시재개발법제 13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

1982. 3. 26

서 울 특 별 시 장

사업의명칭	시 행 구 역	시행면적	인가신청기간	비 고
회현재개발사업	회현재개발구역 중구 회현동 1,2 가동 일원	49,511㎡	1982. 3. 26 -1983.2.28	사업계획결정 81. 11. 13
서울역-서대문 1구역재개발 사업	서울역-서대문재개발 구역 중구순화동일원	48,674㎡	〃	〃
신문로재개발 사업	신문로재개발구역 (3지구)	848㎡	〃	사업계획결정 80. 3. 7

◎서울특별시고시제 12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제 50호(82.2.3)로 결정 및 변경 결정 고시된 성동구 관내 중곡동 220-22호외 2개소(학교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521호(81.12.31)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아래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3.27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학교	숭곡동 220-22 일대	5,622 (1,700)	증 161㎡ (48평)
〃	〃	화양동 12-2 일대	5,597 (1,693)	
〃	〃	자양동 591 일대	7,605 (2,301)	감 1,033㎡ (328평)

나.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류	6	70	자양동 591-2	자양동 591-10	
변경	〃	〃	6	70	〃	〃	폐지

다. 결정도면 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127 호

돼지고기연동가격고시

육류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농수산부훈령 제490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의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 3. 29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1. 돼지고기 연동가격

정육600그람당 1,950 원

2. 시행일 : 1982.4.1 부터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44 호

도시계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

1. 당시 도시계획 재개발사업구역중 사업계획결정된 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을 지정하였기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9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토지등의 소유자는 동 기간내에 시행요건을 갖추어 인가신청을 하여주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인가신청이 없을시는 토지등의 소유자이외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 있음.

1982. 3. 26.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구역별 인가신청기간 지정내역

사업의 명칭	시 행 구 역	시행면적	인가신청 기 간	비 고
회현재개발사업	회현재개발구역 중구 회현동1, 2가동 일원	49,511 ㎡	1982.3.26- -1983.2.28	사업계획결정 81.11.13
서울역 - 서대문 1구역재개발사업	서울역 - 서대문재개발구역 중구순화동일원	48,674 〃	〃	〃
신문로재개발 사업	신문로재개발구역 (3지구)	848 〃	〃	사업계획결정 .80.3.7

사 령

◎ 1982년 3월 27일자 령제 118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조성린	감 사 관	시정개발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전원배	〃	법무담당관	〃
이성구	〃	공 보 관	〃
홍만의	〃	세무지도과	〃
이정기	〃 (지방행정주사)	양 정 과	행정주사
박용웅	〃	세종문화회관	지방행정주사
이종순	〃	종합기술시험연구소	〃
안석진	〃	시 민 과	지방행정주사보
권혁두	〃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지방토목기사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박석안	감 사 관	총 무 과	시방건축기사
김순초	〃	구 로 구	지방행정주사
엄창현	〃	예산담당관	〃

령제 119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염훈현	내 무 국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신현수	기획관리실	〃	〃
염현호	서대문구보건소	〃	〃
조공연	건설관리국	〃	〃
한한열	서부건설사업소	〃	〃
이상천	산업경제국	〃	〃
원재웅	내 무 국	〃	〃
유청하	종합건설본부	종로구 수도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시보
남상익	용 산 구	관악구 신림6동	〃 서기
김찬호	지하철건설본부	구로구 가리봉3동	〃 〃
이재희	서울운동장	은평구 수색동	〃 〃
오길영	성 동 구	감사담당관	지방토목기사

령제 120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심재천	지하철건설본부	서대문구 보건소	지방행정주사
한수일	지하철운영사업소	서부건설사업소	〃

서 울 특 별 시 장